

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고 서



행 정 문 화 위 원 회

수석전문위원 한 철 우

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도 보 고 서

1. 회부경위

이 조례안은 2013년 8월23일 충청북도지사가 발의하여 2013년 8월 28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2. 개정이유

-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권한위임하는 사무규정 신설 및 부서명칭 변경사항을 정하고,
- 신규위임 대상사무 신설 및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변동사항을 정비하여 행정능률 향상과 행정사무 간소화를 도모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-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관련조문 정비 및 부서명칭 변경 : 4건
 -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문구삽입 및 조항 신설 : 2건
 - 부서명칭 변경(경제정책과, 건축문화과) : 2건
- 권한위임사무 신설 : 24건
 - 사회복지법인의 정관변경 인가 및 허가 (1건)
 -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·배급업의 신고 등(8건) : 문화예술과
 -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고시(1건) : 균형개발과

- 유독물영업자에 대한 영업의 등록, 정지, 취소 등 (12건) : 환경정책과
- 청내 전보권 기능직·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(2건) : 충북경자청장
- 상위법령 일부 개정에 따른 사무위임(이양) 변경(삭제) : 17건
 - 위임사무의 변경 : 11건
 - 위임사무의 삭제 : 2건
 - 사무이양에 따른 삭제 : 3건(도 → 시·군)
 - 업무이관에 따른 삭제 : 1건(충청북도지사 → 농업기술원장)
- 관계법령 개정 등에 따른 근거법령 등 변경 : 54건
 - 근거법령 변경에 따른 위임사무의 자구수정 : 9건
 - 근거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: 24건
 - 일련번호 정비 : 21건

4. 부서별 검토사항

- 먼저, 시장·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부서별로 검토해 보면,
 - 복지정책과는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17조 제2항, 같은 법 제23조 제3항의 사회복지법인의 정관변경 인가 및 허가업무를 시장·군수에게 위임하려는 것과 「재해구호법」 제4조의 개정으로 인한 용어를 개정한 것임.
 - 농산지원과의 업무 중 “방제비용 부담통지서의 교부”업무는 농업기술원으로 이관하면서 삭제를 하였음.
 - 축산과는 「약사법」 제45조 제2항의 개정으로 “동물용의약품 도매상 허가 및 관리약사변경신고의 수리”업무가 도지사에서 시장·군수 업무로 사무이양됨에 따라 위임업무에서 삭제를 한 것임.
 - 문화예술과는 「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9조 제2

항의 일부개정에 따른 사무위임의 내용을 변경한 것과, 「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」 제16조제1항·제4항, 제20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, 제10조의 신설로 인한 “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·배급업에 관한 업무 사항”을 시·군 위임사무에 추가한 것임.

- 환경정책과는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69조에 의한 “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 지정 및 행정처분”업무가 도지사에서 시장·군수 업무로 사무이양됨에 따라 위임업무에서 삭제를 하였으며, 「유해화학물질관리법」 제20조에 의한 “유독물영업자에 대한 업무 권한 12건을 시·군 위임사무에 추가한 것임.
 - 균형개발과는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에 의한 “도시공원 조성계획에 관한 사무” 내용 중 “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고시”를 시·군 권한 위임사무로 추가하였으며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의 일부 개정에 따른 “도시·군 관리계획 및 공원관련업무” 등 6건을 변경한 것임.
- 행정조직개편에 따른 관련조문 정비 및 부서명칭 변경 4건, 상위법령 일부 개정에 따른 사무위임(이양) 변경(삭제) 17건, 관계 법령 개정 등에 따른 근거법령 변경 54건은 법령 및 조례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으며,
- 권한 위임사무로 신설한 “사회복지 법인 및 시설의 지도 감독” 등 24건의 사무는 도지사의 권한으로서 이 사무를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의하여 조례로 시장·군수에게 위임하는 것은 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행정효율을 제고하기 위해 시장·군수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한 이견이 없음.

5. 검토의견

□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를 개정하는 주요 사유는

-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권한위임하는 사무규정의 신설과 부서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신규위임 대상사무를 신설하고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변동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. 다만, 본 조례가 도 전부서를 총괄하는 것으로 개정에 따른 일정기간 소요가 불가피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상위법령 개정 후 1년 이상 상당기간 조례정비를 하지 않은 것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붙임 : 1.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끝.